

제16장 예외

제16.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8장(서비스무역) 및 제9장(투자)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16.2조 안보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 3) 통신, 전력 및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 사회기반시설을 불능화 또는 기능 저하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 4) 국내적 비상시, 또는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공동위원회는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와 그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16.3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16.1조제2항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¹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그 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 내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5. 제9.8조(송금)제4항아호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6.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9-나(수용)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¹ 이 항의 목적상, 제16.1조제2항의 과세조치에의 적용은 GATS 제14조라항 및 마항을 지칭한다.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더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7. 가. 이 호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9.7조(수용 및 보상)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9.7조(수용 및 보상)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제9.17조(중재 청구 제기를 위한 의사 통보)에 따른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 요청을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청은 의사 통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9.19조(중재 청구 제기)제1항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리고

2) 베트남의 경우, 재무부 조세총국장

또는 각각의 승계인

8. 이 조의 목적상

가. **조세협약**이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나. 세금 및 과세조치는 제1.5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관세, 그리고 그 정의 중 예외 나호, 다호, 라호 및 마호에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